

의 안	
번 호	

: 2005. 7. .
:

□ 제정 이유

-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
-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간의 연계·협력 강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

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(안 제2조)

-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함
-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둠

나.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(안 제3조)

-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~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함.

다.위원의 임기·해촉(안 제7조, 8조)

-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

라.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,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)

마. 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 및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함. (안 제9조)

바.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(안 제11조)

사.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. (제14조)

□ 참고사항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·제1조의4
- 조례표준안(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-3347<2005. 1. 3>)

구미시조례 제 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②대표협의체는 구미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·단체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(이하 “실무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구성)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부시장·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·구미보건소장·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 위원(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)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, 사회복지담당과장 및 보건의료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
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위원명단 공개)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,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및 직원)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각 협의체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회의 등)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대표협의체는 구체적인 실무사안을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의안을 회부할 수 있다.

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심의사항
4. 심의결과
5. 기타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의결사항의 처리)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(이하 “관계인등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공청회등의 개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4조(협의체 운영지원)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회의수당)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등에게는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협의회 구성의 준비)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“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준비단”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